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II. 검토의견

안 제30조의10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관련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계획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고, 그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각 계획의 명칭을 규정함과 동시에 양 계획간의 상관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한편, 안 제30조의10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과 구분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는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교육부와 협의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 설>	제30조의10(학교 민원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학교민원 처리 계획-----.

② 교육감은 <u>학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2. <u>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u>	② -----<u>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2. <u>학교민원 처리</u>----- -----<u>세부 지원 방안</u>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화 실)